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

2017. 겨울호 Vol.55

# 국 민 권 익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테마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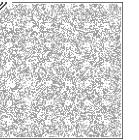
제도 개선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  
부패·공익침해신고 1398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http://www.epeople.go.kr)) 1600-8172  
ACRC홈페이지 [www.acrc.go.kr](http://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

겨울

ACRC NEWSLETTER  
2017. Vol.55



# 국민 권익

WINTER

ACRC NEWSLETTER 2017. Vol.55

## 권익은 '나눔'입니다

강추위에 시리지 않도록  
알맞은 곳에 따뜻함을 더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발을 감싸듯  
근심과 걱정, 슬픔과 억울함까지  
모두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나누어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 ACRC 풀어보기

- 이슈 돋보기 04**  
ADB/OECD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
- With ACRC 08**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 현장인터뷰
- 헤드라인 뉴스 12**  
시기별 위원회 주요 단신 뉴스
- 국민권익위원회 부서 탐방 14**  
공익심사정책과
- 당신의 한 마디로 대한민국이 달라집니다**
- 케이스 스터디 18**  
대구 달성군 죽곡10리
- 환경피해 예방책 마련**
- ACRC Toon 20**
- 2016 반부패·청렴 콘텐츠 공모전 장려상



### 연간 기획 ; 청렴韓 대한민국

- 24 청렴韓 세상**  
청탁금지법 시행 후  
내려진 '첫 형사 처벌' 사례
- 26 청렴韓 변화**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대한민국 청렴으로 물들다
- 30 청렴韓 우리**  
청렴한 우리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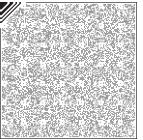
### 테마 풀어보기 ; 제도개선

- 32 테마리포트**  
제도개선 절차와 추진 현황
- 36 테마 인포**  
실내 흡연 피해방지 제도개선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 의결
- 38 테마 톡톡**  
모바일 배달앱 소비자 보호 강화
- 40 테마 스토리**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을 부탁해!

### 세상 풀어보기

- 44 트렌드로 세상 보기**  
조용히, 빠르게 찾아오는  
기술 혁명 '컴테크'
- 46 건강 100세**  
대한민국 4대 중증질환 예방  
\_희귀난치질환 '파킨슨병'
- 48 청렴 인물 답사기**  
청렴의 뿌리를 찾아서  
\_경기도의 청백리
- 52 독자 마당**  
독자 퀴즈와 후기

\* 환경을 생각하는 <국민권익>의 내지는 '친환경 재생용지'로 제작됩니다.



# 대한민국에서 외치는 아태지역 반부패 문화 확산

ADB/OECD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반부패 노력의 성과와 과제를 확인하고 공유하는 장이 서울에서 열렸다. 지난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ADB/OECD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 이야기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으로 개최한 컨퍼런스는 지난 1999년 아태지역의 부패 척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한 이후 올해로 9회 째를 맞았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31개 회원국 및 반부패 국제기구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해 부패 척결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보였다.

• 글+사진. 편집실



기념촬영 중인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과 귀빈들



개회사 하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 반부패 역량을 높이고 각국 경험 공유

컨퍼런스가 진행된 힐튼 호텔의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각국의 참석자들로 북적였다. 오전 9시 30분, 개회식이 시작되고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한국 주도의 반부패 문화 확산을 선언했다. 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아태지역은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와 국가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반부패 문화 확산 방법의 고민과 해결 방안 마련에는 이견이 없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민·관이 함께 공유하고 반부패 역량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환영사를 전했다. 이 국무총리는 “아태지역은 에너지, 인구, 문화 자원이 풍부하지만 경제적 도약과 추가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나라가 많은데, 부패와 연고주의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새 정부가 국민께 약속드린 최고의 국가 과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부패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은 작년 겨울부터 올해 봄까지 무려 6개월 동안 연인원 1천 700만 명이 참가했던 촛불 혁명의 요구이기도 하다”라며 부패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선언했다.

개회식 후 간단한 브레이크 타임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장 밖에는 곧 다가올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부스와 한국의 전통 의상 및 놀이 체험존, 반부패 메시지를 담은 청렴 나무 꾸미기 이벤트존 등이 마련되어 행사가 더욱 풍성하게 꾸며졌다. 열띤 토론에 휴식 시간이 짧아졌지만 그 틈을 이용해 기념촬영을 하는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

15-17 November 2017  
Millennium Seoul Hilton Hotel, Seoul, Korea

청탁금지법을 소개하고 있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폐회식 후 기념촬영 중인 박경호 부패방지부위원장과 내빈들

##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 마련

첫날 진행된 고위급 패널토론에서는 ‘아태지역의 성공사례와 도전과제, 향후 우선과제’라는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기조연설을 맡은 Weert Borner 주한독일대리대사는 부패가 법적인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반부패 정책 수립을 강조했다. 또한 반부패 법 제 강화를 통한 악의 순환을 차단해 시민과 언론이 독립적이고 투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베트남, 홍콩, 바누아트, 인도네시아, 중국, 한국의 순서로 각 국가의 반부패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에 나선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및 시행 효과를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한국의 청렴도 지수가 하락했고, 공직자가 거액의 금품을 받더라도 부패행위의 사각지대 존재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청탁금지법은 이러한 한국 사회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되어왔던 부패 요인들을 근원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청렴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도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박 위원장에게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각 질의에 답변을 마친 박은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토론의 첫 세션이 마무리되었다. 비정부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도 각 국 비정부기구 대표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반부패 컨퍼런스 행사를 통해 부정부패 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를 표명했고, 아태지역 반부패 문화 선도자로서의 위치를 확립했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박경호 부패방지부위원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양일간 진행된 반부패 컨퍼런스는 그렇게 성대한 막을 내렸다.

한편, 17일에는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해외 관계자들이 귀국 전, 도라산 전망대와 통일촌 등 남북 접경 지역 시설을 둘러보고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국민권익위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해외 참석자들이 한반도 대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한국의 군건한 안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지난 3일간 진행된 반부패 컨퍼런스를 통해 국민권익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부패 척결 기관으로서 더욱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갔다.

## 반부패 문화 선도국가로 한걸음 더

15일 오후부터 16일 오전까지는 공공청렴 네트워크(PIN) 회의에서 ‘UN 지속가능개발 2030 아젠다 실현을 위한 청렴 전략’, ‘교육을 통한 다음 세대로의 청렴문화 확산’ 등을 주제로 패널 토론과 그룹 토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법무부 주재로 진행된 법집행 네트워크(LEN) 회의에서는 불법 해외 반출 자산을 송환하는 방안에 대해 월드뱅크(World Bank)와 미국 대형 로펌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그룹 토론은 각 국의 부패 척결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배우려는 열정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참석자와 담소를 나누고 있는 박경호 부패방지부위원장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 현장인터뷰

##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그들을 만나다.

'아태지역 반부패 문화 확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성황리에 진행된 반부패 컨퍼런스 현장에서 다양한 이들을 만났다. 부패인식지수(CPI)로 세계 각국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국제 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이하 TI) 소속 직원부터 유엔개발기구(UNDP) 반부패 업무 담당자, 베트남 감찰원 국장까지. 부패 척결 의지로 하나 된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지금 소개한다.

- 인터뷰+사진, 편집실



Rukshana Nanayakkara (룩샤나 나나카라)

(스리랑카) “안녕하세요. 국제투명성기구(TI) 사무국에서 지속 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Rukshana Nanayakkara입니다.”

### Q 현재 추진 중인 SDG안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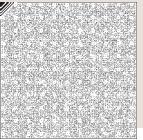
현재 추진 중인 SDG안에는 구체적인 반부패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뇌물 공여·수수가 부패를 경감시키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불법자금의 흐름을 줄여 부폐자산을 회수하고, 공공기관 반부패 노력을 지원하는데 효과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훌륭한 거버넌스를 지원해 궁극적으로 각 국가에 반부패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돋고 있습니다.

### Q 한국의 청탁금지법을 아시나요?

물론입니다. 저는 이 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I의 글로벌부패바로미터(GCB)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에서는 소규모 뇌물 공여와 수수가 비교적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중이 대체로 뇌물을 이용하지 않아도 국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소규모의 뇌물 공여와 수수가 적은 국가 중 다수가 파벌주의와 편파 관련 문제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청탁금지법도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래 관련 규제를 마련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이로써 한국은 부폐를 줄이고 업무 관련성 접대 문화도 차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내용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개인의 의견을 알려드립니다.



**Q 유엔개발기구(UNDP)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Kamolwan Panyasevanamit  
(카몰완 빤야세비나미트)

“안녕하세요! 저는 유엔  
개발기구 방콕 지역 소속으로  
근무 중인 Kamolwan  
Panyasevanamit라고 합니다.”

UN 산하기구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원조 계획을 조정  
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1965년 유엔특별기금(UNSF : UN  
Special Fund)과 확대기술원조계획(UNEPTA : UN Expanded  
Program of Technical Assistance)을 통합·설립하여 1966년  
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정치적 자립  
과 경제 및 사회 발전을 목표로 지속적인 원조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제가 속한 팀은 구체적으로 투명성, 책임, 반부패 관련 업  
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정책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국민의 요구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에 맞춘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책을 구상하고 시행하는 단계까지의 과정에  
수많은 의견이 존재하니까요.

**Q 정부 감찰원은 무슨 일을 하나요?**

제가 속한 정부 감찰원은 민원 처리와 반부패  
관련 시찰·조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더불어  
반부패 정책과 법률 개정을 위한 자문 또한 제  
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권익위를 포함  
하여 다양한 반부패 기구와 협력 관계를 구축  
하고 있기도 하죠.

**Q 베트남의 반부패 정책을 소개해주세요.**

부패 척결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공직  
자의 자산 증식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방안  
입니다. 또한 공직자의 자산과 수입의 출처를  
확인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이 두 문제 모두  
베트남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죠. 국가를 청렴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  
로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정비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  
겠죠. 현재 베트남에서 준비 중인 반부패법안  
은 더욱 다양한 예방과 처벌 방안을 담고 있습  
니다. 물론 베트남은 이미 반부패 분야에서 많  
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향후 한국의 국  
민권익위와 더불어 다른 국가들과 국제 협  
력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Trinh Nhu Hoa  
(찐누호아)

“베트남 정부 감찰원  
국제협력부 소속 국장  
Trinh Nhu Hoa입니다.”



Nikola Sandoval (니콜라 샌도발)

(독일)  
“반갑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프로그램 매니저를 맡고 있는  
Nikola Sandoval라고 합니다.”

**Q 국제투명성기구(TI)는 어떤 기관인가요?**

국제비정부기구(NGO)로 부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기  
관, 민간기관, 시민사회와 함께 국제적·국가적 부패의 극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93년에 설립되었으며, 독일 베를린에  
본부가 있어요. 현재 약 100여 개의 국가 사무소가 있고, 아시  
아-태평양 지역에는 20개의 사무소가 부패 척결의 노력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보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까요?**

TI의 입장에서 반부패 노력은 보다 광범위하게 접근해야 합  
니다. 저는 예방 교육과 사법적 조치를 모두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부패 방지를 위한 교육과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  
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보다 청렴한 사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 ACRC

## HEADLINE NEWS

6

WINTER

ACRC NEWSLETTER 2017. Vol.55

### 한 눈에 보는

####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뉴스



①

### ‘공공기관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 공개토론회 ①

국민권익위는 지난 11월 21일, 중소기업DMC타워 DMC홀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심의·자문기구 의사결정의 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행정학회 최홍석 회장의 진행으로 학계를 대표하는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 8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권익개선정책국장의 발제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 심의·자문기구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빈발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기구의 평가와 신뢰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원회 구성시 공모제·공개추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특정인과 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어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협연, 학연, 지연, 직연, 사제지간 등 제척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들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올해 안에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제1차 반부패 정책협의회 ②

지난 9월 2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 없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 정부의 반부패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박 위원장은 “권력형 비리와 민간부패에 대한 대책 부족, 국가의 반부패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돼 2008년 이후 국가청렴도 지수(CPI)가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윤리 순위도 27위에서 지난해 98위로 하락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정부 주도였던 개별기관 차원의 공공부패에 한정된 반부패 정책에서 벗어나 정부와 시민사회 협치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하여 광화문 일번가와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국민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담합과 리베이트 등 집중신고 대상을 발굴해 민간·기업 부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반부패정책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범정부차원의 부패방지 추진체계를 확립해 2022년 CPI 20위권 진출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0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 경기 광주 동림IC 진입로 개설 현장조정 ③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주민들은 마을을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어 사유지를 이용해 출입해 왔는데 이로 인한 주민 간 마찰이 오랜 기간 발생해왔다. 또한 사유지 도로가 좁아 화재 등 긴급 상황 대처도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국지도 57호선 공사로 조성 예정인 동림나들목 진입로가 마을을 가로질러 설계되자 주민들은 경기도에 부체도로 건설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 10월 25일, 오포읍 사무소에서 주민 대표와 경기도 건설본부장, 광주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해 중재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2019년까지 동림나들목 진입로 부근에 길이 270미터, 폭 4미터의 부체도로를 개설하고, 주민 통행이 가능한 통로박스도 설치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부체도로 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에 사업비 4억 원을 지원하고 토지 보상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③

### 국민권익위-UNDP 베트남 공무원 대상 반부패 연수 ④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전원위원회 심의실에서 유엔개발기구(UNDP) 서울정책센터와 공동으로 베트남 반부패 관계기관 대상 연수를 실시했다. Phí Ngọc Tuyền 베트남 감찰원 반부패국 부국장 포함 8명이 참가한 이번 연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제도 전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자리였다. 베트남 정부는 국민권익위로부터 전수 받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대한 관심 고조를 계기로 향후 국회에서 시범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2차 시범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부패방지법을 개정하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공기업 외 사회적 영향력이 큰 민간 기업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은 이번 베트남 대상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부패영향평가 제도 전수 사업 추진을 제안하고,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방안에 큰 관심을 보였다.



④

### 행정심판 제도 기업설명회 열려 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 서울 종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소속 100여 개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제도 기업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여 부당한 행정으로부터 침해받는 기업의 권익 보호를 보다 확대하고자 올해 처음 마련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최근 기업과 관련된 주요 재결 사례를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상민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앞으로 행정심판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기업의 대표적인 권리구제 제도로서 실효성이 있게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⑤

# 당신의 한 마디로 대한민국이 달라집니다

## 공익심사정책과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이 침해되거나 혹은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 행정, 감독기관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누군가는 공익신고를 ‘세상을 바꾸는 긍정의 힘’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진 단어도 생소할뿐더러 내부 고발자라는 인식이 강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부서가 존재한다. 접수된 공익신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회 발전을 위해 용기 내준 감사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밤로 뛰는 공익심사정책과를 찾아가 보았다.

• 글. 편집실 사진. 이덕재



## 국민 불안 덜어주는 모두의 대나무 숲

A씨는 우연히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불법 폐기물을 무단투기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위법인 것도, 큰 문제를 초래할 것도 알지만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마을에 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소문이 들렸다. A씨는 불법 폐기물 무단투기 때문인가 싶었지만 선불리 누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털어놓을 곳도 없어 답답할 따름이었다. 이럴 때 우리 곁에 있어주는 ‘든든한 뼈’이 바로 공익심사정책과다.

공익심사정책과는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로 심사파트와 정책파트로 나눠진다. 심사파트에서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파악하고 공익침해행위인 279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거자료 등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한다. 국민권익위는 사실확인을 마친 후 해당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한다. 반면 정책파트는 공익신고자에 집중한다. 보복 걱정 없이 신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그들을 배신자가 아닌 ‘영웅’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아울러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포터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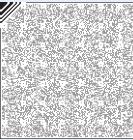


2017년 10월 말 기준

공익신고  
접수 건수 1,864 건

공익신고  
처리 건수 1,606 건

법 시행 이후 ~2017년 10월 까지  
공익신고 접수 건수 23,708 건





## 공익신고자 보호 보복 땐 피해액 3배 배상

하지만 부서의 이러한 노력들에도 공익신고는 단순 불편민원 신고와 달리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다. 편견과 방관을 비롯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보복 걱정으로 인한 두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공익심사정책과에서는 철저한 신고자 보호정책을 시행하여 신고자들이 걱정 없이 양심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절대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고, 신체에 해를 입을 것이 명백한 경우 공익신고자동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으니 보복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공익신고에 대해 잘 모르고 참여조차 미미한 실정이다. 그래도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10월까지 2만 3천건이 넘는 공익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 법이 새로이 개정돼 신고자가 해고·감봉 등의 보복을 당할 경우 그로부터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추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니 신고의 확대를 기대해볼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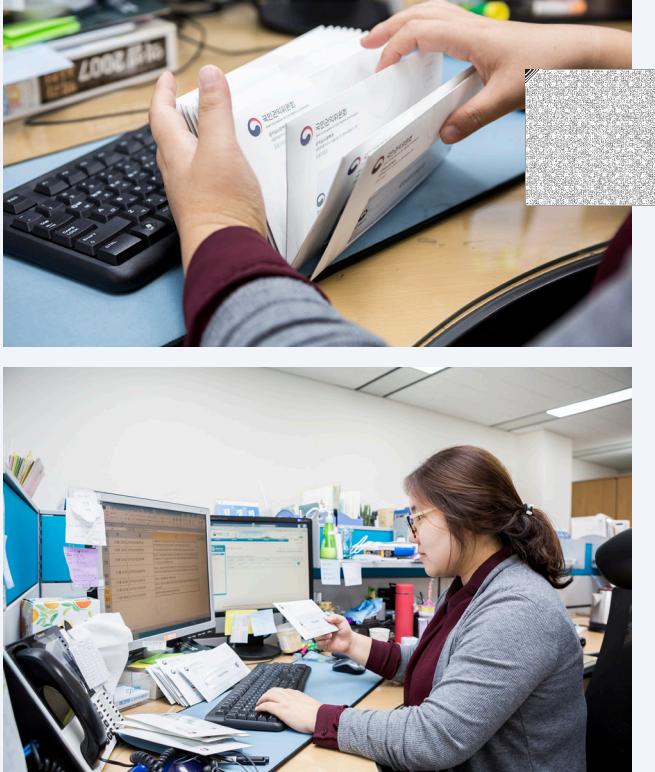
가령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담합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사측이 매달 100만 원씩 6개월 동안 월급을 삭감하는 징계를 주었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신고자의 손해액 600만 원만 배상돼

회사로서는 어차피 주어야 할 월급을 주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최대 1,800만 원까지 배상하게 되면서 신고자에게 보다 실효적인 배상이 가능해지고 기업의 보복을 억제하는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감봉, 계약취소 등 보복을 받은 경우, 그 보복으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받을 수 있는 제도



## 공익신고 사례로 국민 인명사고 예방

저조한 신고율 속에서도 공익신고를 통해 인명사고를 예방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심사팀 김경희 사무관은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신고가 기억에 남는다고 말한다.

“오피스텔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설계 도면에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27로 표기돼 있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 압축강도를 실험해보니 25밖에 안 됐죠. 레미콘 회사에 확인한 결과, 시공사에서는 애초부터 25로 벌주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준공 전이었기 때문에 압축 강도를 27로 시정하고 보강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세대 수가 제법 많은 오피스텔이었는데 국민들을 위험에서 지켜낼 수 있어 매우 뿌듯했습니다.” 이처럼 공익신고는 우리 눈이 끊지 않는 곳에서도 온힘을 발휘하고 있다. 혹자는 “겨우 양심선언 한 마디로 세상이 바뀌겠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한 마디가 모여 열 마디, 백 마디가 되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초석이 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 초석을 세우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때문에 공익심사정책과는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다양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위법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공익신고를 할 경우 형벌을 적극적으로 감면해주고자 한다.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을 땐, 신고자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부패·공익신고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 아직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신고를 망설이는 국민들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비록 다른 부서에 비해 공익심사정책과의 역사가 길지는 않다. 하지만 국민들의 권익을 지키고자 하는 직원들의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크다고 자부한다.

“국민들께서 공익신고와 공익심사정책과를 떠올릴 때 ‘언제, 어디서든 내 편을 들어주는 믿음직한 친구’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떳떳하기 위해 양심의 목소리를 내어 준 공익신고자들의 자화상이 아름답게 그려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따뜻한 시선으로 멋진 삶을 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익신고의 진짜 의미는 타인의 잘못을 들키내기 위함이 아닌 우리 사회를 새롭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드는 희망의 신고(新高)이다. 그리고 그 뒤에서 묵묵히 받쳐 주는 공익심사정책과가 있기에 더 빛날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이 기대된다.

#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 통영시 철공단지 기업 고충 해결

국민의 고충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또 한 번 해냈다. 이번에는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얹힌 지역과 기업 간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기업의 고충을 해결한 국민권익위가 있으니 걱정 말아요, 그대!

정리. 편집실

### 누가, 어디서?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한 철공단지에는 바다와 인접한 지역적 특성에 맞게 선박수리 업체 공장이 27개나 입주해있다. 그러나 이곳은 집중호우 시 경사면의 붕괴 위험이 있어 지난 2012년 1월 통영시로부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통영시와 통영선박기관수리공업사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은 도산면에 위치한 법송산업유통단지와 인접한 법송매립지를 공장 이전 예정부지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철공단지에 대한 보상협의와 법송매립지의 도시관리 계획 결정이 늦어져 협동조합은 공장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통영시는 지난해 제12호 태풍 ‘남테운’의 영향으로 철공단지 일부 구간에 토사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올해 상반기까지 27개 공장을 계획대로 이전하도록 협동조합에 요구했다.

### 언제, 어떻게?

기업의 고충에도 귀를 기울이는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말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통영상공회의소에서 통영지역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협동조합은 법송매립지의 도시관리 계획을 조속히 결정하고 27개 공장 철거 기한을 연기해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민원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친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 15일 오후, 박계옥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 무엇을, 어떻게?

국민권익위의 합의안에 따르면, 통영시는 도시관리 계획 절차 진행에 최대한 협조하고 내년 1월부터 27개 공장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다. 또한 이전 예정부지인 법송매립지 사업시행자인 (주)동삼은 도시관리 계획의 빠른 결정을 위해 노력하고, 협동조합이 조기에 건축 허가를 신청할 경우 토지 사용에 동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동조합은 통영시의 지장물 철거에 적극 협조하고 도시관리 계획 결정에 따라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로써 근 5년 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해 골머리를 앓던 사안에 해답의 길이 열렸다. 작든 크든 어떠한 고충에도 언제나 내 일처럼 다가가 손을 내밀어 주는 국민권익위가 있기에 국민들은 오늘도 걱정 없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다.



국민권익위 박계옥 상임위원은 “통영시가 지역의 어려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연말까지 공장 철거를 연기하고 조속히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하기로 했다.”라며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6년 반부패·청렴 콘텐츠 공모전  
웹툰 일반부문 장려상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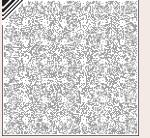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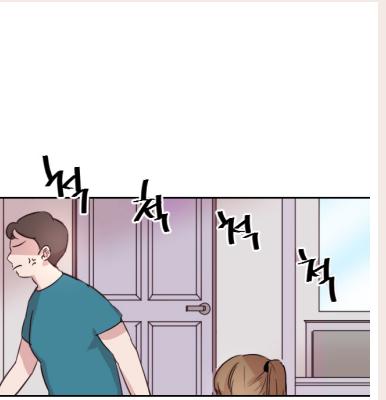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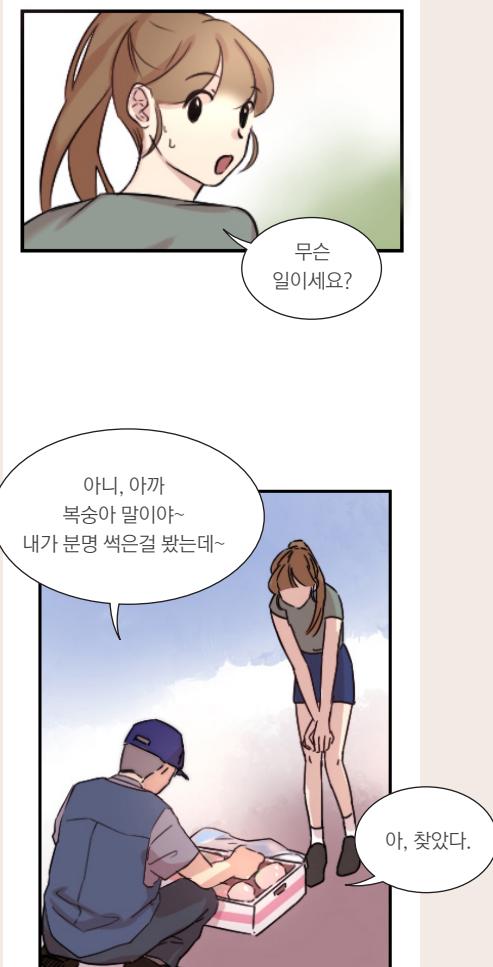
## 청 렴 淸맑고 廉깨끗한 당신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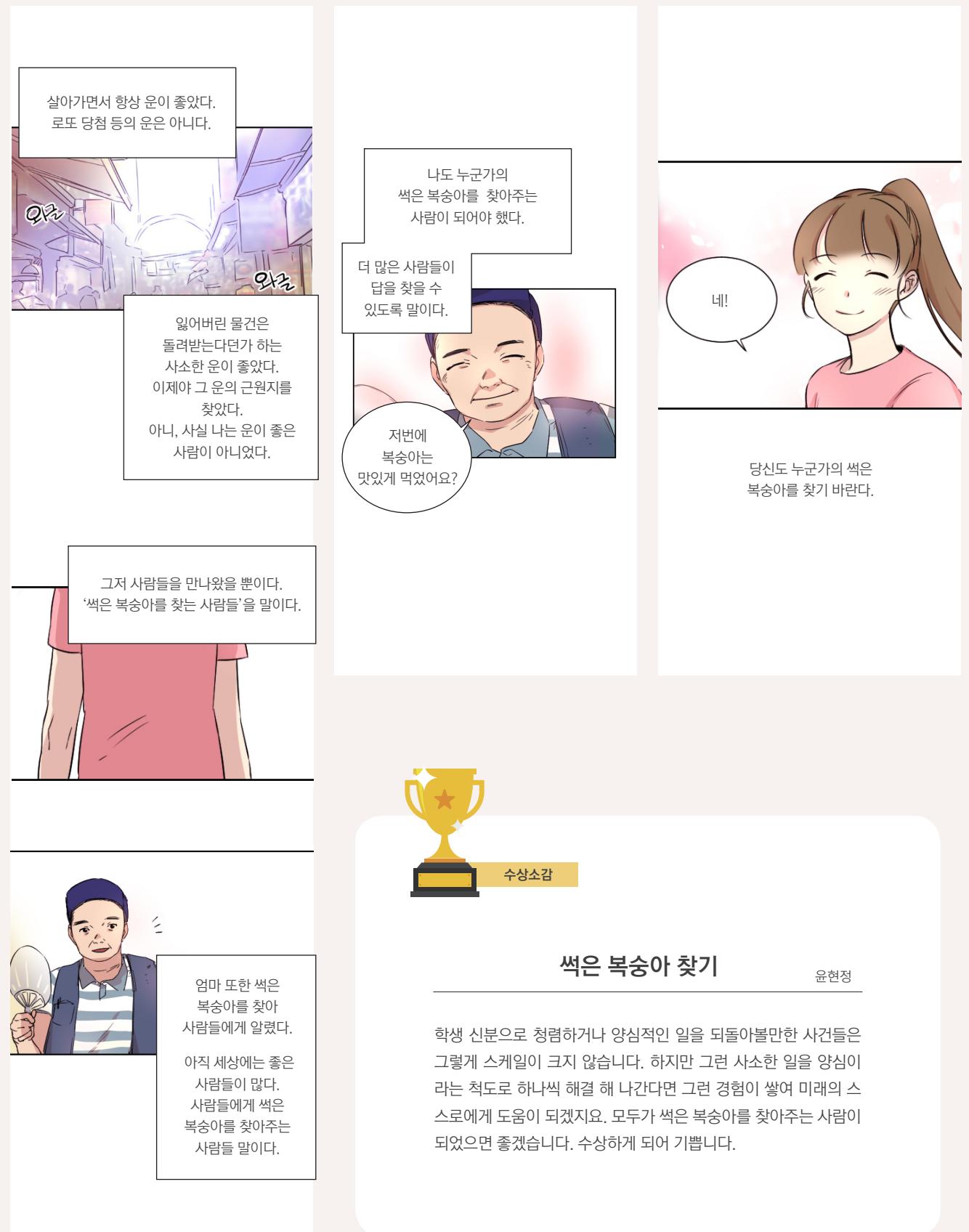
본 작품은 사연(수기) 일반부문 장려상 수상작을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 부문별 수상작은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integritycontents.kr>)  
'수상작갤러리'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썩 은 복숭아 찾 기

사연: 박 다정  
그림: 윤 현정

살아가면서 항상 운이 좋았다.





## 청탁금지법 시행 후 내려진 첫 형사 처벌 사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7. 5. 선고  
2017고단 611 판결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특정 공기업 간부와 직원 6명이 법을 위반해 해임·파면 되거나 징계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뇌물은 총 6,220만 원에 달했다. 특히 2급 간부 A씨는 하도급업체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아 지난 1월 파면됐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형사 처벌을 받기도 했다.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이번 사례를 판례로 함께 알아보자.



### 사실관계

A씨는 2016년 11월 7일경까지 공공기관인 ○○공사의 △△사업단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B씨는 2011년 12월까지 위 ○○공사에 근무하다가 2013년 9월경부터 도로포장 공사업체인 (주)□□의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A씨는 2016년 10월 21일 위 △△사업단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아 불구속 기소되었다.

한편, △△사업단은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비하기 위해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의 도로 개량을 목적으로 설치된 조직이고, (주)□□는 당시 △△사업단이 발주한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시설 개량공사 중 교량의 상판을 포장하는 공사 등을 원정 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행하고 있었다.



### 법원의 판단

공직자들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유죄가 인정된다. 다만,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다.

### 〈청탁금지법〉

#### 제8조 제1항

① 공직자들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 사건의 검토

이 사건은 공직자들이 직무의 관련성 여부를 떠나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고, 일정한 예외(예컨대, 친족이 제공하거나 기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금품 수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도록 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처음으로 형사 처벌이 선고된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 사실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에는 해당 조항에 대하여 일각에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를 따지지도 않고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형법상 뇌물죄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떡값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공직자등의

글. 이성기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금품 수수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조항은 공직자등의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공사가 발주한 교면의 포장 공사를 하청 받아서 하고 있는 (주)□□의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으므로 직무와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제8조 제1항이 정한 금액(1회 100만 원 초과, 회계 연도 300만 원 초과) 이하를 받는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8조 1항을 적용하여 형사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가 금품을 받은 것이 직무와 관련이 있었지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이다. 만약, A씨에게 일정한 대가 관계까지 인정되었다면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B씨의 회사가 이미 사업을 수주하여 시행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A씨와 B씨 사이에 별다른 대가 관계를 인정하거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법원의 판단은 내용적으로나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평가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대하여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항소를 하지 않아 재판이 확정되었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등의 금품 수수를 근절할 수 있는 유용한 장치임을 확인시켜 주는 매우 의미 있는 사례다.

## 청탁금지법 시행 1년

## 대한민국 청렴으로 물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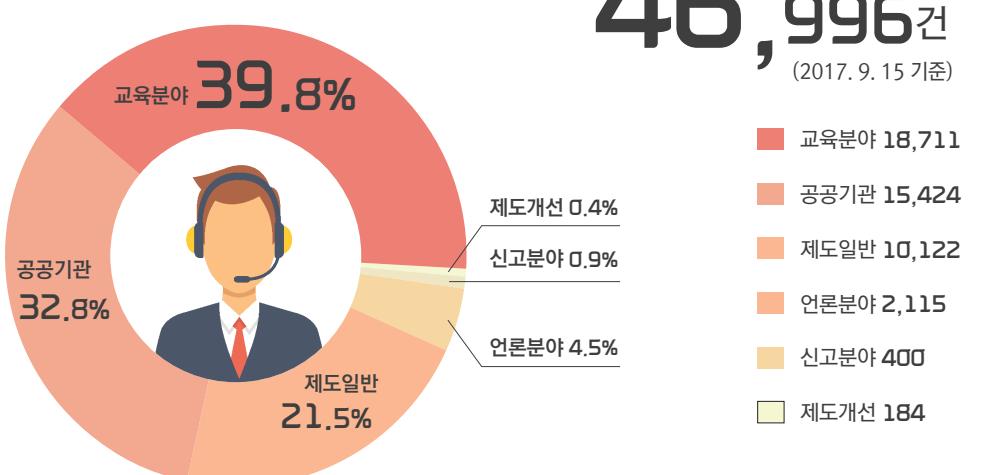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 부처 합동 TF 구성, 자문 위원단 활동 강화,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 확대 및 개편 등을 통해 원활한 법 해석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갔다. 또한 각급 공공

기관에 청탁금지법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청탁방지담당관, 영향업종 관련 단체 간담회를 개최해 법 이해도 및 인식을 제고 시켰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청탁금지법은 이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추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파란 청렴의 물길이 일고 있는 대한민국의 변화,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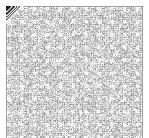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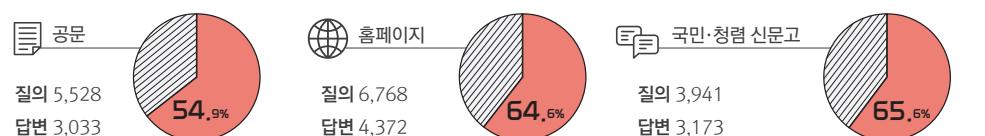
국민의 관심이  
스며들다  
-  
상담 및 질의

시행 전부터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던 청탁금지법은 국민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7년 9월 15일 기준, 시행 1년 동안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를 통한 전화상담은 총 46,996건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유권해석 질의는 총 16,237건이 접수되었고, 이중 10,578건에 대한 답변을 처리했다. 답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9월 기준으로 65.1% 수준이다.

[청탁금지법 전화상담 분야별 현황]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현황]



지난 1년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건수는 총 4,052건으로, 시행 6개월(2,311건) 대비 1,741건이 증가했다. 유형별 현황을 보면 부정청탁 신고는 제3자 신고가 공직자들의 자진신고 보다 많았다. 이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입법 취지대로 청탁의 거절 명분으로 작용하여 공직자의 자진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동일 부정청탁이 재차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반면 금품등 수수 신고는 자진신고가 제3자 신고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된 유형은 외부강의 등 위반신고로, 상세 유형을 보면, 지연 또는 미신고가 99.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해당 사례는 기존 외부강의에 대한 규율을 받지 않던 기관에서 많이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교나 학교법인, 공직유관단체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종결된 사건을 제외하고 현재 1,130건에 대해 조사 중인 상태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처리 현황] \* 조사 기간: 2016년 9월 28일 ~ 2017년 7월 31일 (10개월)



법 시행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진 않는다. 그에 알맞은 교육과 대상자들의 올바른 이해가 뒤따라야 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워크샵 등을 지원해왔다. ‘청탁금지법 교육 현황’ 통계를 통해, 우리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 평균 4.1회의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소속기관이 많은 중앙행정기관의 교육 횟수는 98.9회로 가장 많아, 제도에 대한 적응 및 숙지를 위해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대대적인 청탁금지법 교육이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물론 타 기관에 비해 교육 횟수는 저조했던 학교와 학교법인 및 공직유관단체의 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과거 규율대상이 아니었던 기관에서 외부강의의 신고 지연, 미신고가 다수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신고절차 및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하는 등 제도 보완사항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대두됐다.

[청탁금지법 교육 현황]

기관유형	조사대상 기관 수	교육 횟수	기관당 평균횟수
현법기관	5	52	10.4
중앙행정기관	53	5,240	98.9
지방자치단체(지방 교육청 포함)	260	3,519	13.5
공직유관단체	1,089	7,936	7.3
학교·학교법인	22,467	81,270	3.6
계	23,874	98,071	4.1

이제 시행 1년이다. 청탁금지법 상 자진신고가 은밀히 행해졌던 부패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제공자에 대한 적발과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채용, 입학, 진료, 시설 이용 등)에서의 부정청탁 신고와 이를 통한 적발이 현실화되고 있고 이를 통해 관행화된 청탁이 감소했다. 또한 형사법으로 제재가 곤란했던 사각지대를 청탁금지법으로 규율

하고, 소액 금품수수라도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시 엄정히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부패에 대해 자체적으로 대응했고, 양벌 규정을 통해 기업의 청렴과 윤리의식을 강화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한결 더 깨끗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정리.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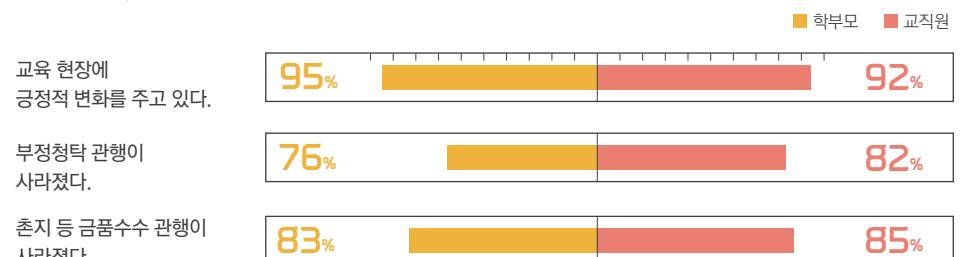
## 통계로 보는 청탁금지법

“교육현장  
촌지 사라져”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학부모 3만 6,947명과 교직원 1만 8,101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학부모 87%와 교직원 95%가 청탁금지법이 교육 현장에 잘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부정청탁이 사라졌는지 묻는 항목에서도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촌지 등 금품수수가 없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부모 83%, 교직원 85%였다. 법 시행 후 대부분 학교는 가정통신문과 핸드폰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절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공지를 보내고, 스승의 날 행사에도 ‘선물 없는 행사’를 진행하는 등 변화를 겪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청탁금지법이 학교에 더 잘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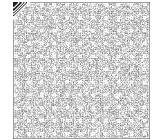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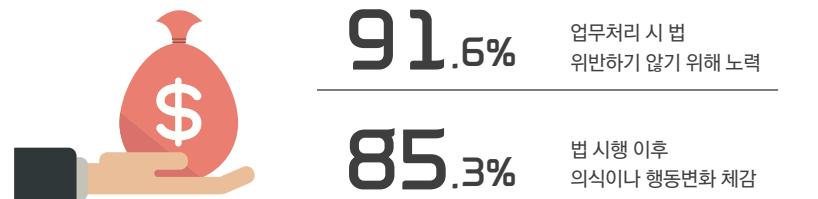
[서울 학부모 및 교직원이 느끼는 ‘청탁금지법’ 1년 효과]

※ 서울시교육청, 학부모 및 교직원 5만 5048명 대상 설문조사



“직원 91.6%  
청렴성 향상에  
긍정적”  
(한국전력)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한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원들(총 2만 1,082명 중 8,976명 응답) 중 91.6%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청렴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협력회사 종사자 응답자(2,229명) 중 85.3%는 법 시행 이후 행동의 변화를 체감한다고 답했다. 전반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더치페이의 일상화와 각종 업무의 투명성이 증대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와 함께 한전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능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제시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는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스스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체크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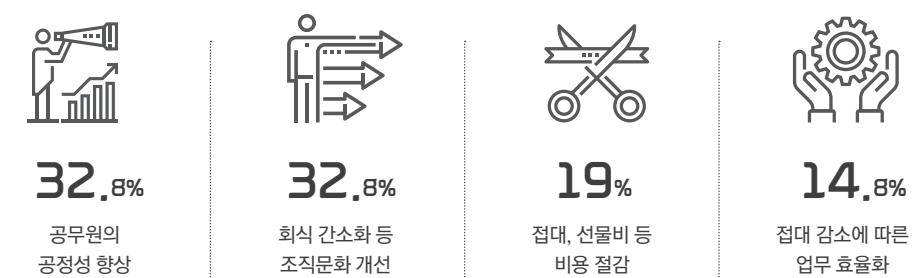


## “청탁금지법, 경영 활동에 도움”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74.5%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83.9%는 ‘법 시행 이후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상공인 300명(음식점·농축산·화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별도의 조사에서는 70.2%가 ‘법 시행이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화훼 도소매업(85.4%)과 음식점(79.8%)의 답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는 68.5%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좋아진 점]



## “법 시행 이후 평균 민원처리기간 단축돼” (대구시)

대구시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전후의 민원처리 현황을 분석했다. 시, 사업소, 구·군에서 접수해 처리된 민원 91만 8,746건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접수 건수, 평균 처리 기간 등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법 시행 이후 민원 건수와 평균 처리기간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려·불가 처리 민원은 1.6% 증가했지만, 62건으로 미미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인한 공직자들의 민원처리 자세는 경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청렴으로 나아갈 길

시행 1년으로 모든 성과와 영향을 분석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지지하는 법이다. 게다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작은 상황을 직시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변화된, 그리고 앞으로 변화될 사회를 조금 더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 하지만 길 끝에 청렴한 세상이, 더 나은 대한민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 같이 조금만 더 걸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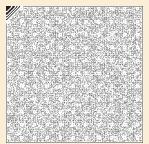
## 청렴韓 우리 학교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2012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발의해 ‘김영란법’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재작년 봄에 국회를 통하여 작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년 만에 이 법률이 우리 사회 정의 실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여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 학교에서 보는 청탁금지법

한 달 전 교사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서울시 교육청 설문조사에서는 교사 중 92% 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 서울시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9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접대 또는 선물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결국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기업의 접대 부담이 크게 줄고 매출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통계 자료가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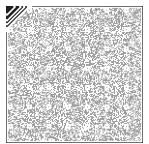
교육계에서는 ‘촌지’라는 말로 청탁이 관행이다시피 했다. 옛날에는 학동의 부모가 훈장님에게 촌지(寸志)로 정성을 표하는 게 미담이었는데 지금은 뇌물이니 불법이니 욕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세상 참 삐딱하게 되었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근대 이전의 신분제 사회에서는 연고(緣故)가 출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일가(一家) 친인척 관계를 통한 청탁과 특혜가 만연한 세도 정치로 조선 사회가 망하게 되었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다. 근대 이전 시대에도 부정 청탁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한 경우가 없지 않았다. ‘분경금지법’을 예로 들 수 있다. 조선 초중반에 실시된 ‘분경금지법’은 관직에 있는 친척을 사석에서 만나기만 해도 별을 받을 만큼 엄청 가혹한 법이었다. ‘분경(奔競)’이라는 말은 ‘분주하게 쫓아다니며 경쟁에 몰두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인데 이 시대만큼 경쟁이 극심한 때가 또 없으니 부정청탁을 벌하는 법도 더 가혹해져야 하지 않을까. 촌지(寸志)를 두고 ‘사람 사이의 정리(情理)’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다시 바라보는 청탁금지법

요즘 학생들은 매일 시험을 치르듯이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수행평가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일상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이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면 바로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어떤 학생이 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이는 곧 특혜를 구걸하는 비행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에게 선물을 줄 형편이 안 되는 학생은 심각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 촌지는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심각한 적폐이다.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물어봤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의외로 적게 나와 처음에는 좀 실망스러웠다. 응답자의 29% 정도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5% 정도였다. 이 법률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대한 인지도에서도 드러났다. 응답한 학생의 21% 정도만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선생님에게는 선물을 할 수 없다는 시행령 규정을 알고 있었다. 다시 생각해 보니 이 학교에 다니면서 촌지를 받아본 기억이 없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무관심은 학교 구성원들이 부정 청탁과 관련되어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제정된 법률에 대해 응원하는 의사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은근히 자부심도 느끼게 된다. 사과 반쪽을 나눠 주면서 “김영란법에 안 걸려요.” 농담을 하는 학생의 모습이 참 정겨웠다.



글. 이한수  
(인천 인성여자고등학교 교사)



## 부패 방지와 고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 절차와 추진 현황

국민의,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해결, 부패방지 업무, 행정심판  
제도와 더불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더 나은 세상으로 우리를 이끈다.

국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발자취를 소개한다.

정리.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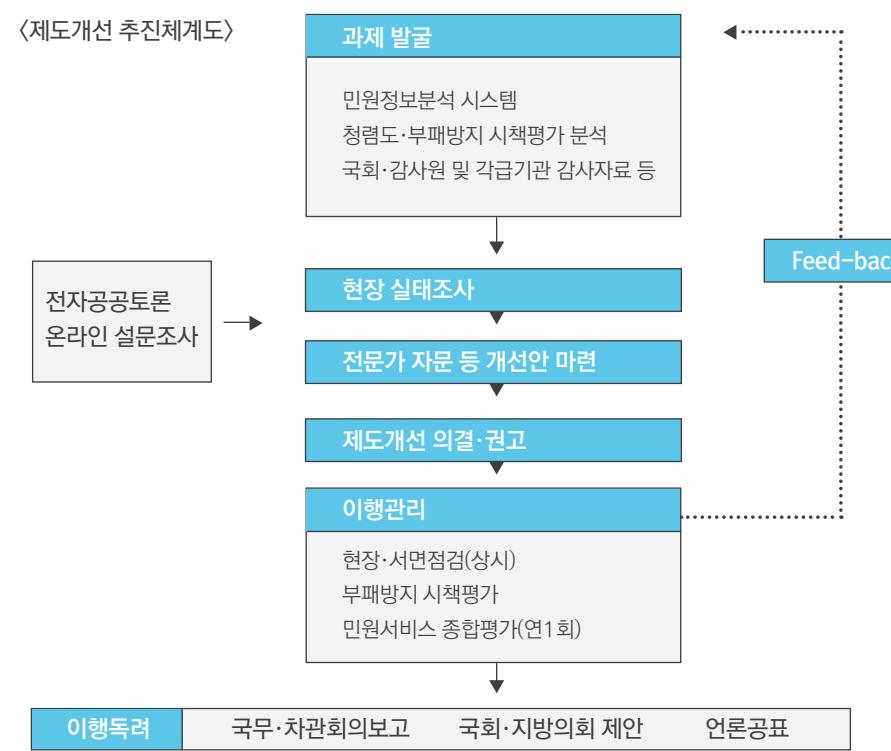
### Step 1. 제도개선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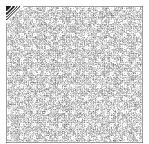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정책을 바르게 다잡는 것이 바로 제도개선 권고다.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행정제도 운영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행한다. 또한 부패의 발생은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도 한다.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부패방지 권리위법」  
제27조)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권고  
제47조)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제도와 운영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제29조)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제27조, 제52조) 권고를 받은 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점검 등

### Step 2. 제도개선의 절차

제도개선은 과제발굴,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진행된다. 이렇게 마련된 개선방안을 소관기관과 협의 후 전원위원회 의결로 해당기관에 권고한다. 권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효과적 이행을 위해 권고 과제는 현장·서면 조사, 평가 등을 통해 점검하고, 필요시 국무회의 보고, 국회제안 등으로 이행을 관리한다. 제도개선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된다.





### Step 3. 제도개선의 성과

그렇다면 국민권익위 출범 이후, 얼마나 많은 제도개선 권고가 이루어졌을까?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8년부터 올 10월까지 총 735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권고했다. 권고 분야는 고충과 부패로 나뉘며 주요 개선 사례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제도개선에서 볼 수 있다.

(단위 : 건)			
연도	권고 건수	부패방지	고충해소
2008년	96	9	87
2009년	117	18	99
2010년	91	22	69
2011년	81	33	48
2012년	66	22	44
2013년	66	16	50
2014년	63	18	45
2015년	57	14	43
2016년	52	10	42
2017년	46	16	30
계	735	178	557

### Step 4. 제도개선의 발전

제도개선 권고는 해당기관이 이행을 해야 실제적 개선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있다. 다수 기관 권고과제, 정부 정책에 부합한 시의성 있는 과제 등을 선정하여 기관별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다. 지난 4월에는 온라인 ‘제도개선 관리시스템’을 개통하기도 했다. 또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기관별 권고 이행실적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권익위의 노력 덕에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여러 제도들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 Step 5. 제도개선의 방향

국민권익위는 소관기관과 ‘제도개선 이행 전략회의’를 개최하기도 한다.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과 관련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회의에서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 협조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행이 미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원활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이행을 독려한다. 개선과제 이행이 저조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하기도 하고, 각 기관장의 관심 제고를 위한 국무회의 보고, 국회 입법 제안 등을 추진 중에 있다.

#### 한걸음 더\_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 관리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대통령상 수상

지난 11월 2일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한 제도개선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2017년도 국민생활밀접 행정·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각급 행정기관이 참여를 신청한 제도개선 사례 총 196건 중 상위 12건의 우수사례가 경쟁을 펼쳐, 현장심사 점수와 전문가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대통령상(대상2, 금상2), 국무총리상(은상6)이 선정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제도 개선 분야에서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했다. 과도한 대입 전형료에 대한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대입 전형료 세부 책정 지침 마련 등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이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이다.

####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 관리 투명성 제고〉

최근 수능시험의 선택형으로 바뀌고 대학별 수시모집 비중이 확대되면서 과도한 대입 전형료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의 대입 전형 과정에서 부적절한 전형료 책정과 목적에 맞지 않는 전형료 예산집행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입 전형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전형료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집행기준을 강화하는 등 전형료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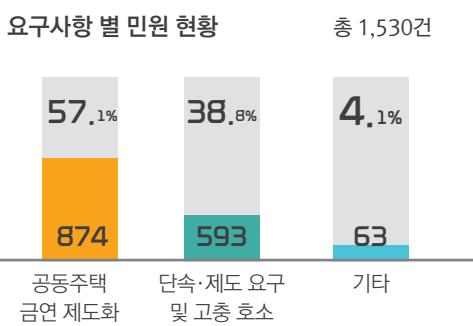
- ① 전형료 책정 및 심의 절차 투명성 제고
- ② 전형료 예산과목별 집행기준 강화

국민권익위와 교육부의 노력으로 올해부터 인하된 대입 전형료가 적용되었고, 전형료뿐만 아니라 입학금 폐지와 인하를 촉진하는 효과까지 기대해볼 만 하다. 또한 내년에는 원가 산정, 집행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이 본격화되어 전형료가 더욱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 덕에 공공기관의 청렴성 제고와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언제나 국민 곁에 동반자로 남아 있는 국민권익위! 그들과 함께 걷는 이 길이 든든하다.

“나쁜한 오후.  
춥다고 이불 속에만 갇혀 있을 수는  
없는 법! 오랜만에 환기를 위해  
창문을 활짝 열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어디선가 흘러들어오는 담배 냄새...  
또 아랫집에서 담배를 피워대나 보다.  
황급히 창문을 닫았지만 매캐해진

실내 공기에 얼굴이 찌푸려진다.  
이웃까지 피해주는  
집 안에서의 흡연,  
막을 순 없을까?”



(※2011년부터 2016년 5월까지 접수된 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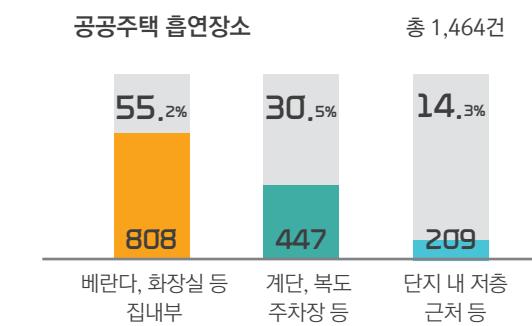
## 이웃의 肺(폐)에 弊(폐)끼치지 않는 세상

### 실내 흡연 피해방지 제도개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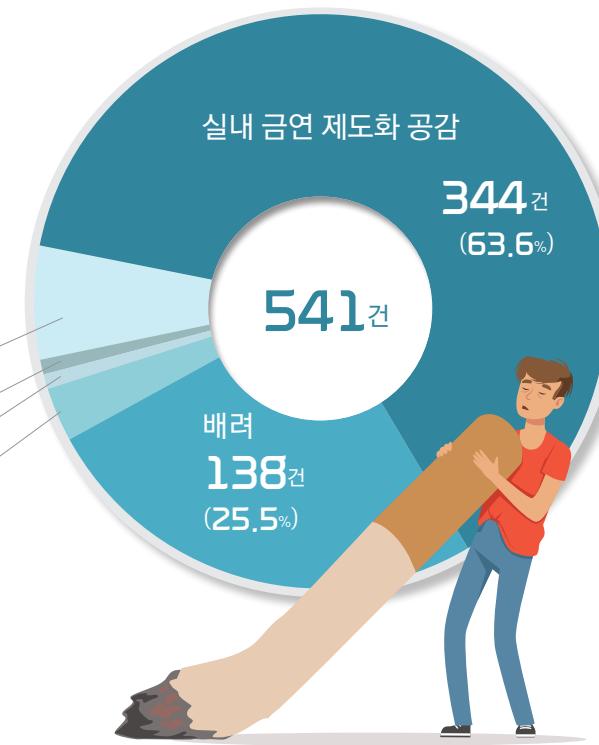
• 정리. 편집실

#### 이제, 피해 주지 맙시다

간접흡연으로 위아래 이웃까지 괴롭히는 실내 흡연자들에게 이제는 “그만!”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곧 시행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토대로 말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결과와 국민생각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층간 소음보다 간접흡연 문제 가 더 심각한 상황임을 간파했다. 2011년부터 2016년 5월까지 접수된 민원 총 1,530건의 내용별 현황을 보면,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이 ‘공동주택 금연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접수된 민원 중 흡연 장소가 명시된 1,464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간접흡연 피해는 베란다, 화장실 등 집 내부가 제일 많았고, 계단과 복도 주차장, 단지 내 놀이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간접흡연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생각함은 다수 시민의 생각을 모아 정부 정책과 제도 등의 개선을 추진하는 국민 참여 플랫폼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실내 금연 제도화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규제보다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적은 의견이지만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우리, 세상을 바꿔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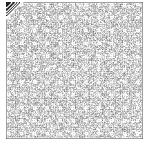
국민권익위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지 1년여 만인 지난 7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내용 \* 제20조의2 신설

-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들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은 국민의 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제도개선 권고가 법 개정으로 이어지고, 곧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러한 규율도 서로를 배려하고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건, 어쩌면 국민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국민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국민권익위 덕분에 국민들의 건강과 권익이 한층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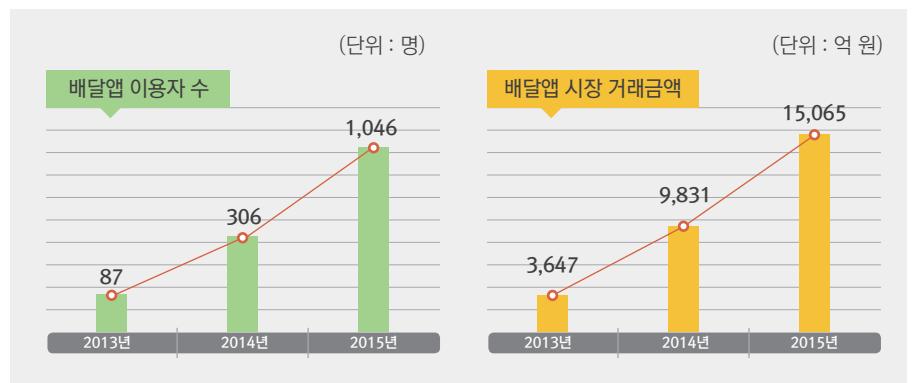


# 제도개선 사건의 재구성

## 모바일 배달앱 소비자 보호 강화

### 팩트 1. 배달앱 사용자 증가

최근 스마트폰의 일반화와 주문·결제의 편리함을 이유로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 팩트 2. 소비자 권리 보호 사각지대 발생

전자상거래의 특성과 배달앱 서비스 제공자(이하 배달앱사)의 지위로 인해 배달앱 이용자 권리 침해의 문제가 생겼다. 배달앱사는 관련 법령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중개업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 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와 달리 직접 거래자가 아니므로 거래에 있어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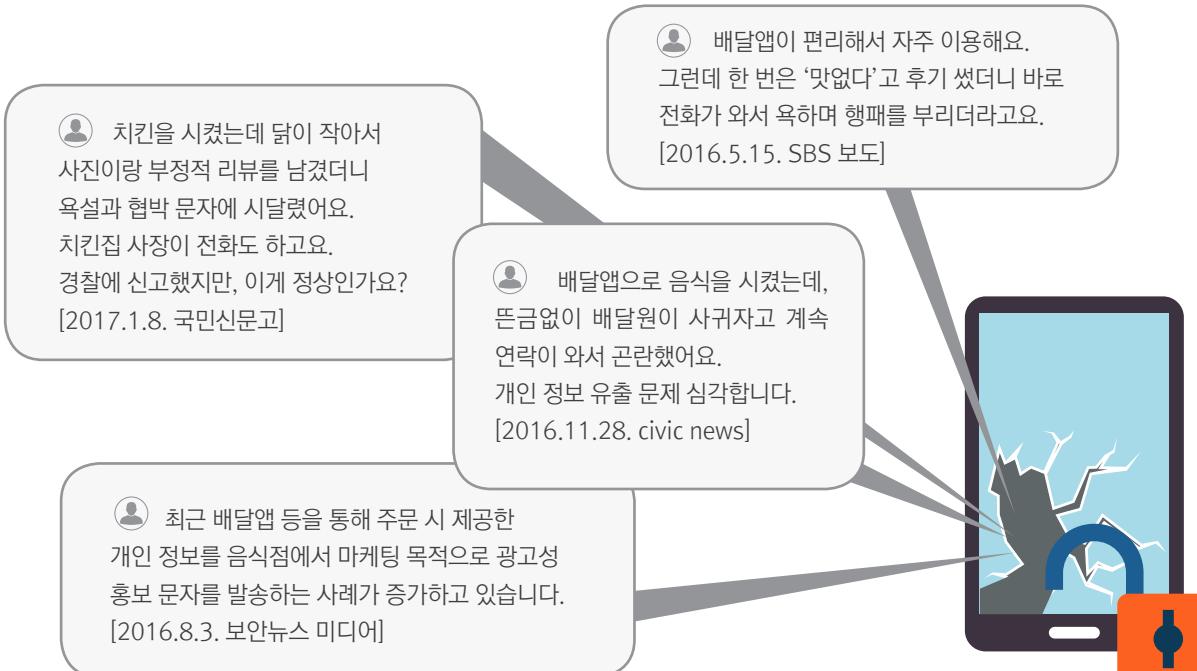


콕! 터치 한 번으로 주문부터 결제까지, 다양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배달앱. 최근 떠오르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의 대표 사례로 소비자와 배달 업체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사용의 간편함에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는데...?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가 이번엔 소비자를 위해 나섰다!

- 정리. 편집실

## 문제점. 소비자 개인 정보 침해

배달앱사의 개인 정보보호 조치는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가맹점주가 배달앱 이용자의 정보를 목적 외로 남용하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소개된 민원 사례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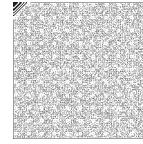
## 개선방안. 전자상거래 법 개정 등 배달앱사의 책임 강화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법!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 25일 의결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먼저 전자상거래 법을 개정하여 중개업자의 관련 조치 의무와 책임을 제도화시키도록 했다.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예시>

현재	개선안(예시)
〈 신설 〉	<p>제20조의4(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적·기술적 조치와 책임)</p> <p>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제공한 소비자에 대한 정보가 제공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또한 법적 제도화와 함께 공정위가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자율준수규약 협의 등 이행 가능한 방식으로 배달앱사의 자율 규제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배달앱사의 기술적 예방조치와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관리) 의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분쟁조정과 배달앱사의 책임 등을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배달앱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배달의 민족’은 지난 1월부터 ‘고객 안심번호’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휴대폰 번호 대신 안심번호가 일시적으로 생성되어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를 덜어냈다. 국민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18년 9월까지 자율 규제를 마련하고, 2019년 9월까지 법률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국민권익위가 있기에 더욱 편리한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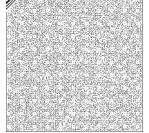


# 제도개선을 부탁해!

글. 제13기 국민권익 블로그기자단



안녕하세요. 제13기 국민권익 블로그기자단 주건욱입니다. 올해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을 보호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국민권익위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제도개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둘 대규모 집합상가 입주 소상공인 권리보호 및 영업환경 개선 방안

전국 대규모 집합상가에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들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집합상가 입주 소상공인들이 관리회사로부터 과다한 관리비 징수, 영업환경 침해 등 부당행위를 당해 민원을 제기하여도 행정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었죠.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국 주요 도시 대규모 집합상가 229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69개 상가(30%)는 관리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었고, 대규모 집합상가 관리주체 및 관리업무에 대한 규정이 혼재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행정감독 규정이 미비하여 관리 사각지대의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규모 집합상가 시설관리비 공개/ 비공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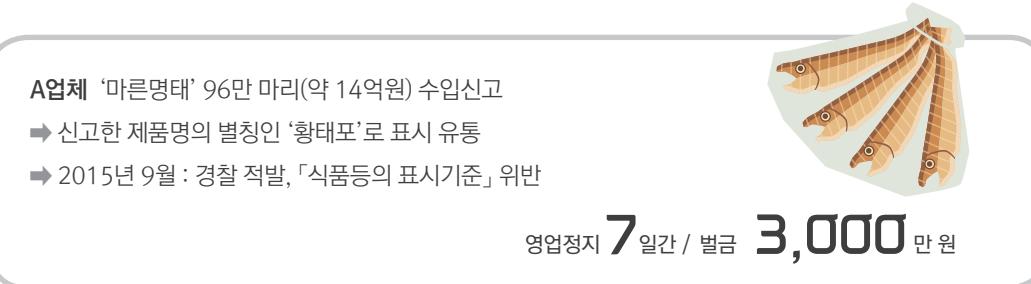
(단위 : 개)

구분	상가수	공개			비공개	
		계	공개주기			
			월간	분기		
합계	229	160	119	3	38	
서울시 (25개 지자체)	120	90	65	-	25	
부산시 (15개 지자체)	25	21	19	-	2	
대구시 (8개 지자체)	8	8	6	-	2	
인천시 (10개 지자체)	39	15	11	2	2	
광주시 (5개 지자체)	10	8	7	-	1	
대전시 (5개 지자체)	17	8	3	1	4	
울산시 (5개 지자체)	3	3	1	-	2	
수원시	2	2	2	-	-	
청주시	2	2	2	-	-	
창원시	3	3	3	-	-	

국민권익위는 대규모 집합상가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관리규약 제정, 관리비 부과내역 및 계약 정보 등의 공개, 회계서류의 보관·관리 및 회계감사, 장기수선계획 수립, 관리비 예치금 징수 관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한 규정도 신설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하였습니다.

## 사례 하나 수입수산물 제품명 신고방식 개선 방안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제품명으로 상호와 상표 표시와 허위·과장이 없는 모든 표시사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물의 경우, 수입신고 시 신고관청에서 이미 정해놓은 제품명 목록 중 선택하여 제품명으로 표시 및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신고관청에서 정한 제품명이 제품의 특성과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임의로 제품명을 변경하여 유통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이 관련 규정 위반임은 물론이고, 자신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위 업체는 제품명 목록 중 ‘마른명태’로 수입 신고하고, 제품의 별칭인 ‘황태포’로 표시 유통하다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내 식품과 수입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과 달리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만 자율적 표시를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행 신고 방식 외에 상호와 상표, 제품특성 등을 고려한 제품명으로도 수입신고를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안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습니다.

## 사례 셋 민원현장 발굴 제도개선 - 영업부담 완화와 원스톱서비스 강화

기존 민원해결 방식은 국민이 제기한 민원사항 등을 토대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방식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기존 접근방식에서 나아가 현장에서 잠재적 국민불편 사항을 찾는 것으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 민원담당 공무원과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 및 개별 면담을 진행하여 영업부담 완화를 이루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기존에는 옥외광고물(간판)의 설치허가를 받은 후 3년마다 연장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이는 간판의 변경사항이 없음에도 신고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불필요한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현장조사에서 관련 부서 간 또는 기관 간 관련 자료가 공유되지 않아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원스톱서비스 강화로 서로 관련 자료를 공유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유사한 내용의 자료를 중복하여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권고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강해야 경제가 튼튼해집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의 이중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우리나라에는 그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불편한 제도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권익을 지켜줘!



안녕하세요! 제13기 국민권의 블로그기자단 **권민성**입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여러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는 민원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개선하는 제도 또한 많았는데요. 지금부터 사례와 함께 살펴볼까요?

## 사례 하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개선하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에 연결하여 신호등의 상태를 음향으로 알려주는 부가장치를 말합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경찰청 규격에 따라 설치되며 유지·관리됩니다. 음향신호기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보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무장애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즉,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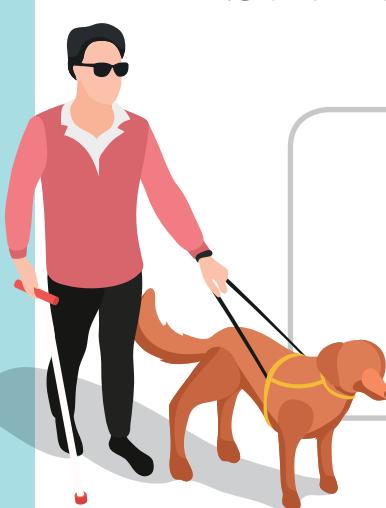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음향신호기 대부분이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고장신고를 하려 해도 관할기관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표시되어 있더라도 점자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실제 이용자가 시각장애인인 신고할 수 없는 불편이 있습니다. 고장 난 음향신호기 담당 부서가 시청인지, 경찰청인지에 대해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경찰청,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협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불편을 개선하였습니다.

### 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불편 개선안

첫째,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상단에 고장 시 연락 가능한 안내번호를 지자체 민원번호인 지역번호-120(서울의 경우 02-120)으로 일원화하여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각장애인을 위해 안내번호에 점자표기 병행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음향신호기 설치 및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작동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리 및 교체계획을 수립·시행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은 “국민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으로 고장 난 음향신호기가 조속히 수리되고 안내번호도 점자로 표기되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국민권익위의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안내표시 개선 사례는 시각장애인이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에 관한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맞춤형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 사례 둘 시각·청각 장애인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 희망을 주는 따스한 손길

시각 장애인 대학생인 성호(가명) 씨. 어렵게 진학한 대학교지만,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시각 장애인용 서적을 찾기가 어렵고, 시각 장애인용으로 제작을 요청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성호야, 국민권익위에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겠니?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에 대해서 말이야.” “그런 게 있어요?” “한 번 해보는 거지 뭐. 우리 성호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잖아. 해보는 데까지 해 봄야지. 선생님도 도와줄게.” 성호씨는 도서관에 있는 시각 장애인 컴퓨터로 국민신문고에 사연을 올렸습니다. 사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대체자료의 제작과정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직접 겪은 불편한 점을 논리적으로 써내려갔습니다.

‘대체자료를 제작하고 서비스하는 기관이 각기 나누어져 있어 기관마다 독립적으로 대체자료를 제작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자료가 발생하고, 다양한 자료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려면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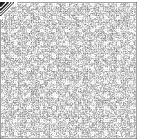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 기간은 최소 2주에서 길게는 3개월 이상 소요되고, 대체자료도 다양하지 못해 장애인들의 지식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습니다. 제도개선 방안은 대체자료 제작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해 주고, 제작 계획을 공개하도록 해 중복제작을 없애는 한편 장애인 정보 누리터 이용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 사례 셋 장애인용 공중화장실 이용여건 제도개선 추진

2012년에는 공공시설의 일반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불명확한 규정에 의해 실제 일부 공공시설에 남·녀 공용화장실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장애인용 공중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현재 공원 등 공공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공용이 아닌, 남자용과 여자용 화장실로 구분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상생활의 불편함부터 생활에 꼭 필요한 제도개선까지, 장애인의 본질적인 권리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국민권익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도 길을 걷다가 고장 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보시면 어디로 신고할지 아시겠죠? 우리 모두 권리개선에 동참해보아요~!



# 조용히, 빠르게 찾아오는 기술 혁명 ‘캄테크’

스마트폰 다음의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가 ‘사물인터넷’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계의 주요한 핵심으로 떠 오르고 있는 지금,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사람의 명령 없이도 사물들이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선두에 글로벌 ICT 공룡 기업들이 서서 획기적인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경쟁으로 인해 시장은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빠르고 요란한 기술 경쟁의 장에서 미래의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조용한 기술’이라는 점은 아이러니하기 그지없다. 조용하다는 의미의 영어 단어 카(Calm)에 기술을 뜻하는 테크(Tech)가 합쳐진 조용한 기술을 뜻하는 합성어 ‘캄테크(Calm-Tech)’는 사물인터넷 기술 경쟁이 한참인 지금 다른 어떤 기술보다도 뜨거운 감자로 화두에 올라있다.

글. 최덕수 기자 출처. 앱스토리 매거진



## 캄테크가 추구하는 세 가지 가치

캄테크는 1995년 유비쿼터스 개념의 창시자 마크 와이저와 제록스의 수석 연구원이자 세계적인 학자 존 실리 브라운이 ‘디자인 카크놀로지(Designing Calm Technology)’를 통해 처음 주창한 개념으로, 현재의 카크테크와 당시의 그것은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현재는 카크테크를 단순히 청각적으로 조용한 기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보를 취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칭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카크테크란 ‘단순히 조용한 기술’과 ‘사물인터넷과 결합한 조용한 정보 취득’의 두 가지 상이한 개념을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같은 개념이 실제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개념들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정보의 취득과 분석, 이에 따른 결과의 도출, 그리고 실제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물질에서 이뤄질 수 있는 기술 진보의 선행이 필수적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의 진보가 실제로 이뤄진 지는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의 사물들에게서 맞춤형 서비스를 받기 위한 기술의 발전, 단말기의 보급이 이뤄진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사물의 자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의 입력은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어떤 행태인지 단말기들이 알아서 정보를 취득하고 또 자동으로 자료를 분석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진보된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진보된 형태를 가리켜 현재 시장에서는 주로 ‘캄테크’라고 부르고 있다. 즉,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카크테크라는 개념은 원래의 ‘조용한 기술’이라는 의미와 ‘조용한 스마트 정보 취득 및 서비스’의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주로 후자를 칭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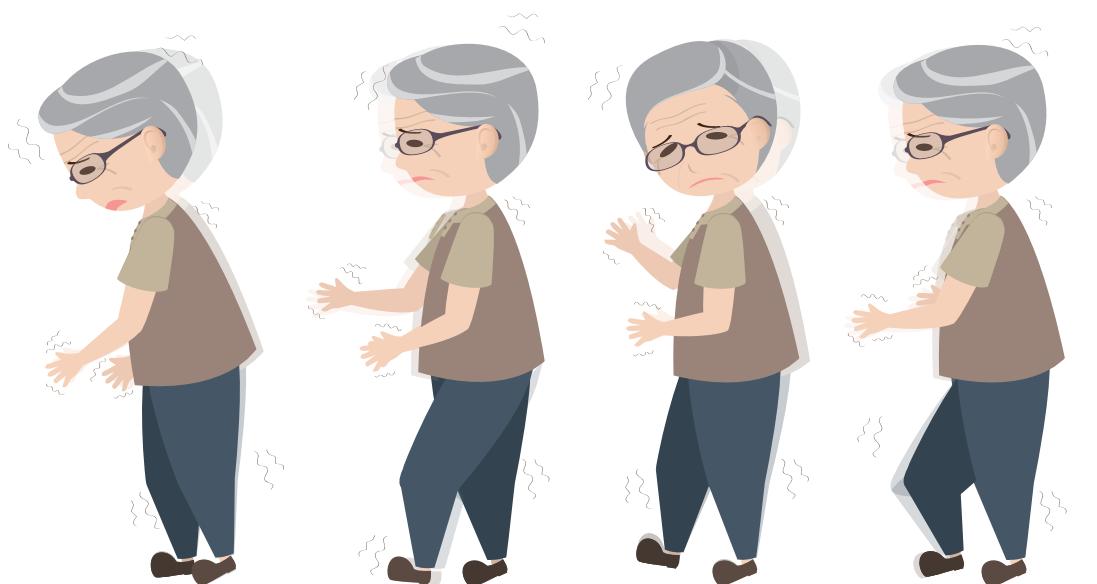
## 앞으로 더 넓어질 카크테크의 범주

캄테크가 추구하는 가치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이용자의 관심을 가능한 적게 끌 것을 뜻하는 ‘무자각성’이다. 이용자가 자각하지 못하는 조용한 상황 속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또 이것을 통해 이용자가 필요로 할 때 알아서 나타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무자각성의 요건으로 이야기한다. 두 번째는 ‘확장성’으로 이는 현실과 가상의 자연스러운 어우러짐, 그리고 이를 통해 다른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함을 뜻한다. 마지막 세 번째 가치는 ‘융합 서비스’로, 이는 카크테크가 다른 서비스와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를 정리하자면 카크테크란 어떤 특정한 기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채로 정보를 모으고 또 분석해서 이용자에게 적절한 혜택을 주는 모든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확장성, 융합 서비스의 가치에 부합하는 현대의 카크테크 개념에 가장 부합되는

것은 최신의 사물인터넷에 적용된 기술들임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전적인 의미의 카크테크는 현관등의 예가 있다. 사람이 다가가면 움직임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점등되는 현관등은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카크테크의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이는 현재 이야기되는 카크테크와는 거리가 먼 기술이다. 현관등은 무자각성에는 부합하지만 확장성, 융합 서비스의 가치는 충족시키지 못한다. 현관등이 현대의 카크테크에 부합하는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여야 할까. 현관등이 켜진 횟수와 시간을 분석해서 이용자의 생활 패턴을 유추하는 ‘확장성’, 그리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가 집에 도착할 시기에 자동으로 에어컨을 가동시키거나 온수를 가동하는 등의 ‘융합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우아말로 현대의 카크테크에 부합하는 기술로 이야기할 수 있다.

## 과거, 그리고 현재의 카크테크의 개념

사용자의 정보를 취득해서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가 있다. 스마트폰과 스마트 워치가 연동되면 이용자의 생활 패턴, 수면 시간, 운동량, 칼로리 소모량 등의 정보가 취득되고, 이런 생체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휴식 혹은 운동을 권하기도 한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물인터넷, 카크테크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 가전제품으로 시야를 넓혀 보면 최근 국내에 출시된 스마트 에어컨이 좋은 사례가 된다. 시중에 출시된 스마트 에어컨들은 인체감지 센서를 통해 이용자의 위치를 감지해 자동으로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조절한다. 영유아가 많은 유치원에서는 천정으로 바람을 내보내고, 사람이 없으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춰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시킨다. 주변의 온도, 습도를 센서를 통해 파악하고 운전량을 조절해 사람이 쾌적함을 느끼는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도 한다. 공기청정 기능을 부착하고 있는 스마트 에어컨의 경우는 미세먼지를 감지해 실내 온도와 함께 공기청정 기능까지 자동으로 조절하기도 한다. 카크테크는 우선 기존의 서비스에 조용히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점차 적용 사례를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커피를 즐기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카페를 찾아갔음을 알 수 있는 위치정보, 혹은 찾아갈 시간을 기반으로 카페 멤버십 앱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등의 소소한 시도부터 말이다. 카크테크 발전을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인 디바이스의 보급은 이미 충분히 이뤄졌으니, 이제 카크테크를 기반으로 한 질적 진보만이 남았다. 카크테크를 통한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은 머지않아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획기적으로, 빠르게 바꿔놓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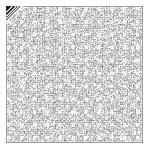
파킨슨병이란 지금부터 대략 200년 전인 1817년에 영국인 의사인 제임스파킨슨이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6명의 환자들을 관찰하고 ‘진전성 마비(shaking palsy)’라는 병명으로 처음 보고한 후 세상에 알려지게 될 질환으로 처음 발견한 의사의 이름에 따라 파킨슨병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처음 붙여진 병명에서 알 수 있듯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흔히 수전증이라고 알려진 떨림, 동작이 느려지는 서동의 증상이 나타나며, 이외에도 근육이 뻣뻣해지는 경직과 병이 진행되면서 자세반사의 이상으로 쉽게 넘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료제공.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엔젤스푼 16호 발췌)  
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손영호 교수



### 희귀난치질환 소개

## 파킨슨병



대개 이러한 증상들은 몸의 한쪽에서 시작되어 때때로 중풍에 의한 반신 마비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다른 퇴행성 뇌질환과 마찬가지로 한 번 발병하면 낫지 않고 서서히 진행하게 되며, 발병 후 10년에서 15년 정도가 지나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전체 인구로 보면 대략 1,000 명당 1~2명 정도의 환자가 있으며, 60세 이상 인구의 1~2% 정도가 이 질환에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병 연령은 대부분 50세 이후에 발생하나 대략 10% 정도에서는 50세 이전에 발병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남자환자가 여자환자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대체로 남자환자와 여자환자의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발병원인은 무엇인가요?**

파킨슨병은 중뇌라는 부위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소실되어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경세포가 왜 소실되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환경적인 영향과 내재적인 요인이 관여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환경적 위험인자로는 농약에 장기간 반복 노출되는 경우에 발병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파킨슨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드물고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유전적이 영향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떨림과 서동, 경직 등의 증상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한쪽 손이나 다리가 떨리기 시작해서 점차 심해지는 소견을 보이는 경우, 이러한 떨림과 함께 동작이 어려워지는 증상이 있으면 파킨슨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 30% 정도의 환자들에서는 떨림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도 하여 진단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육이 뻣뻣해지는 경직의 증상은 환자가 자각하기는 어려우며, 경험 있는 의사의 진찰을 통해 경직의 증상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뇌의 도파민수송체에 대한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PET(양전자 단층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라는 검사를 시행하면 도파민 신경세포가 줄어든 것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상 증상과 PET 검사를 하더라도 파킨슨병과 유사한 다른 질환들과의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다계통위축증, 루이체치매, 진행성핵상마비 등의 질환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질환들과의 감별을 위해 약물치료에 대한 반응과 병의 진행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파킨슨病 환자들 중 많은 사람들에서 발병하기 전부터 경미한 이상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후각 기능의 장애나 수면 중 꿈을 꾸면서 하는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나타내는 렘수면장애의 증상이 선행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파킨슨병의 치료는 약물치료가 기본이며 일부 환자들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해주는 데보도 파제제가 대표적인 약물로 약 90% 이상의 환자들이 이러한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약물이 치료제로 쓰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질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는 치료 약제는 확실히 입증된 것이 없습니다. 흔히 약물을 오래 복용하면 약물의 효과가 없어진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약물의 효과는 질병의 말기에도 유지가 됩니다. 다만 파킨슨병이 진행되면서 약물의 효력지속 시간이 짧아지거나 불규칙해지고 아울러 약효가 있을 때에는 이상운동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심각하게 환자의 생활에 장애를 줄 때 심부뇌자극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질환을 치료하거나 진행을 멈추는 치료는 없으나,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조만간 좋은 결과가 발표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랜 기간 파킨슨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은 다양한 식품이나 시술들을 과대 광고하는 사례들이 급격히 늘고 있어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움직이기가 힘들어지면서 운동량이 줄어들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운동을 유지하는 것도 약물치료 못지않게 중요하며, 흔히 우울증이나 불안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어 이러한 증상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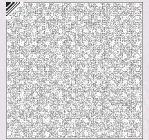
# 청렴의 뿌리를 찾아서

## 경기도의 청백리

경기도는 청백리의 고장이다.  
 조선시대에 청렴결백한 공직자의 상징인  
 청백리를 60여 명이나 배출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경기도내 곳곳에 묻히거나,  
 경기도를 생활의 근거지로 삼았다.  
 청백리는 ‘청렴의 아이콘’이다.  
 경기 청백리들은 도덕과 청렴뿐만 아니라  
 실제 민생 현장에서 뛰어난 행정 능력과 공정한  
 재판 등 전문 관료로서 실무 능력도 보여줬으며,  
 백성이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편다.  
 부패한 권력은 국가시스템마저 무너트린다.  
 한국의 청렴도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며  
 절대부패로부터 갓 벗어난 상태에 불과하다.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며,  
 청렴문화가 뿌리내리길 바란다.  
 그러기에 청백리 정신은 시대의 중요한  
 정신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글. 이동화(인천일보 문화부 기자)





## + 경기도의 청백리

조선시대 청백리 200여 명 중 60여 명이 경기도에 연고를 두고 있는 경기출신 청백리다. 조선 초기 격동기에 명재상을 지낸 방촌 황희, 40년 재상을 지낸 청백명상(淸白名相) 오리 이원익, 유유자적 소를 타고 다닌 고불 맹사성, 비 새는 초가집에 살면서 우산으로 빗물을 피해 우산 정승으로 불리는 하정 류관, 청문고절(淸文苦節)로 추양받은 용주 조경, 조광조의 문하생으로 검소한 삶을 지향했던 인재 흥섬 등이 경기 청백리이다.

여기에서, 끝까지 수양대군을 내쳤던 충절한 청백리 청파 기건, 문무를 겸비한 원종공신 이계 신공제, 병석에서도 풍류를 즐겼던 지족당 임호신, 조정의 표준이며 백관의 으뜸이었던 동고 이준경, 부자(父子) 청백리 이제신·이명준, 기녀의 내조로 재상이 된 일송 심희수, 사치가 나라를 망친다면 검소한 삶을 산 기천 흥명하 등도 있다.

이들은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에 별서를 두고 출입했으며, 은퇴한 뒤에도 살았다. 파주와 광주, 광명 등 경기도내 곳곳에 생가 유적이나 묘소 등 청백리의 자취를 남겼다. 태조 때 청백리 1호로 뽑힌 사간공 안성이 터를 잡은 광주시 중대동 덧골(덕곡)마을은 광주 안씨 600년 세거지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여기에는 안산의 성호 이익과 파주의 올곡 이이, 남양주의 다산 정약용 등 경기출신 실학자들은 민생을 살리는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하고, 넓고 병든 조선 후기의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다산은 전남 강진 유배에서 풀려난 1818년 남양주 고향마을에 돌아와서 <목민심서>를 집필해 새로운 공직자상을 제시했다. ‘애절양(哀絕陽)’ 같은 처참한 민생현장을 목격하고 목민관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기록한 긴급 처방전이었다. 내년이면 목민심서가 나온지 200년이 되는 해이다. 다산이 넣고 자라고 묻힌 남양주 마재마을은 오늘날 ‘청렴 성지’로 부각되고 있다.

## + 조선의 명재상 방촌 황희

방촌 황희(黃喜 1363~1452)는 청백리인가, 아니면 부패한 재상일까. 그는 대표적인 청백리로 꼽히지만, ‘대사헌 시절에 금을 받았다고 해서 ‘황금 대사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같은 엇갈린 평가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뇌물 등에 관한 기록 때문에 시빗거리로 남아 있다.

그는 정치 일선에서 원칙과 소신을 견지하면서도 때로는 관용의 리더십을 발휘했다. 태조~세종 때까지 56년 동안 관직생활을 하면서 영의정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고, 66세에 청백리에 뽑혔다. 그는 87세에 관직에서 물러나 파주 반구정에서 인생을 관조하며 풍류를 즐겼다.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에 묻혔다.

그는 평생을 관리로 지내며 원칙과 소신, 관용과 배려를 실천했으며, 탁월한 조정능력을 발휘한 ‘행정의 달인’이었다. 왕의 개혁과 정책이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조정하고, 논쟁을 조율해서 합의

를 이끌어 냈다. 그는 최장수 재상이었지만 작은 기와집 바닥에 거적 때기를 깔아 놓고 살 만큼 청렴했기에 ‘황희 정승’이란 애칭으로 오늘날까지 존경받고 있다.

## + 청백리 재상 오리 이원익

‘오리 정승’ 이원익(李元翼 1547~1634)은 난세의 재상이다. 그가 만년에 여생을 보낸 광명시 소화동에 관감당과 종택, 영정, 묘소 등의 유적이 남아 있다. 그는 선조와 광해군, 인조 등 3대에 걸쳐 영의정을 지냈다. 그는 ‘나라를 튼튼히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백성을 편안하고 잘 살게 해야 한다’는 ‘안민(安民)’ 우선의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현장행정을 펼쳤다. 44년 동안 재상이었지만, 재산이라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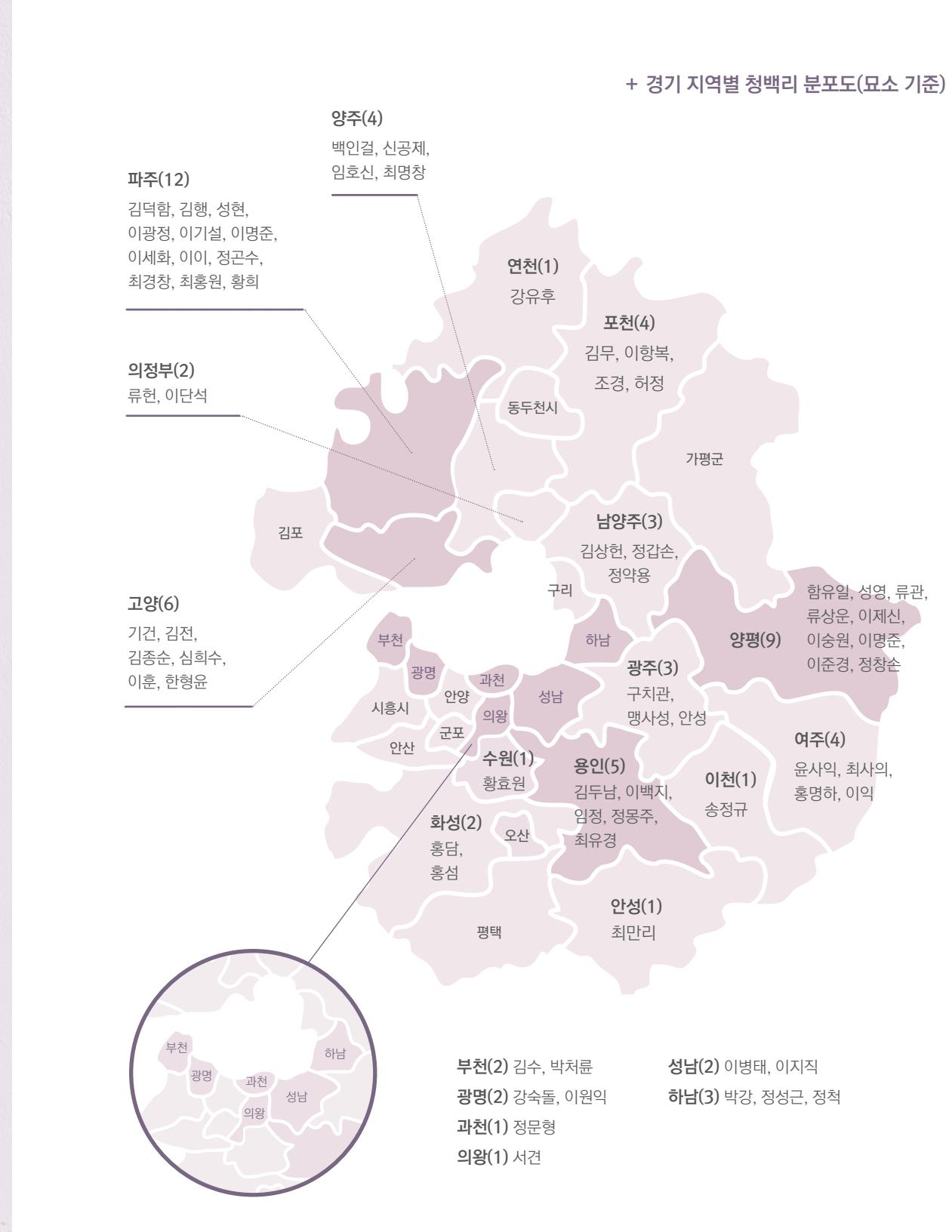
조선 중기 사회는 임진왜란과 인조반정, 정묘호란이 일어난 혼란기였다. 안에서는 붕당정치로 분열하고, 밖으로는 외적이 침입한 것이다. 왕권이 무너지고, 관료는 부패하고, 백성은 피폐했다. 나라가 위태롭던 격동기 때, 그는 이이와 유성룡, 이순신, 이항복, 이덕형, 곽재우 등 쟁쟁한 당대 인사들과 교류하며 난세를 헤쳐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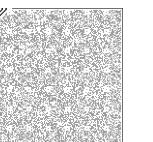
그는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중앙정치의 인물이기 보다는 지방행정의 달인이었다. 임진왜란 때에는 전선에까지 나아가 전란을 극복하는데 기여했다. 이순신 장군이 모함에 빠졌을 땐 그를 지지해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그는 든든한 배경도 없고, 로비나 이벤트도 할 줄 몰랐다. 하지만 낭중지추(囊中之錐)라고 하던가. 그는 능력을 인정 받아 임진왜란 중에 우의정으로 조정에 들어간 이후 재상의 반열에 올라 승승장구했다.

## + 부자(父子) 청백리

조선시대 대표적인 부자 청백리도 있다. 청강 이제신(李濟臣 1536~1583)과 잠와 이명준(李命俊 1572~1630)이다. 이들은 양평군의 전의 이씨 청강공파유적지 묘역에 잠들어 있다. 자식들에게 ‘재물을 썩은 흙처럼 보라’고 가르친 청강은 녹봉을 받으면 모두 가난한 친족에게 나눠 줬다. 그의 넷째 아들 이명준은 부친을 닮아 강직했으며, 선정을 베푼 인물이었다. 이제신의 ‘귀우당(歸愚堂) 어리석음으로 돌아간 집’과 이명준의 ‘해갑와(蟹甲窟) 아주 작은 게딱지만 한 집’라는 집 이름에서 그들의 청렴한 선비정신을 엿볼 수 있겠다.

오늘날 경기도의 청백리를 재해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청렴 결백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 강직하면서도 균형감각을 갖춘 품성,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위기에 빠진 국가를 구해 내려는 노력까지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독자의 소리

지난 <기울호>를 읽고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입니다.

실제 공익신고 사례를 재구성해 보여준 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이해하기 쉬워서 좋았습니다. 공익신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신 것 또한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저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허윤아(부산 강서구)

'다산 정약용 유적지 탐방'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학생 때 남도답사로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다산초당을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백성을 두려워해야 함이 백성을 향한 통치의 기본임을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조광선(전남 곡성군)

반부패 청렴 콘텐츠 공모전 웹툰 부문 수상작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이 피해보는 일 없이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부정행위가 바르게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권성현(대구 동구)

국민콜110의 하루가 기억에 남습니다. 주·야로 24시간 국민의 가려움을 해소해주는 상담사들의 노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교대 근무를 통해 국민의 민원을 처리하는 사실이 놀랍고 고마웠습니다.

김재준(울산 북구)

'참 잘한 선택' 웹툰을 보면 좀 더 많은 국민들이 공익신고에 용기를 갖고 당당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상급자의 비리를 그저 관행이라고 보아 넘기는 일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가 청렴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강미야(경기 시흥시)



권익위 열독왕

<국민권익>을 꼼꼼히 읽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 QUIZ.

국민권익위원회와 아시아개발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공동으로 개최한 '〇〇〇/〇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가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 아태지역 반부패 문화 확산이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31개 회원국 및 반부패 국제기구 관계자 등 350여 명이 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힌트 : 4~7p 이슈 돋보기)

지난호 정답

모의행정심판경연대회

정답자

박윤진(서울 동작구)

허무안(충북 단양군)

박홍민(전남 순천시)

김남일(강원 강릉시)

송강호(경기 부천시)

<국민권익>을 읽고 소감과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각 다섯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The O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2018. 2. 9 - 2. 25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The PyeongChang 2018 Paralympic Winter Games

2018. 3. 9 - 3. 18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받는 사람

국민권익

2017 WINTER Vol.55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 담당자 앞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국민권익>!

더 나은 <국민권익>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작은 목소리도 더 크게, 더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

---

---

---

2. <국민권익> 겨울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

---

3. <국민권익>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

---

---

---

---

## 2017년 겨울호

권익위 열독왕 QUIZ 정답 : ●●● / ●●●●●●●●

<국민권익>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 국민권익소식지 혹은 정책홍보 - 국민권익소식지